

1. 개정이유

건설산업 생산구조 개편을 위해 종합·전문 건설사업자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136호(2018. 12. 31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종합·전문 건설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여 업역폐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발주자가 건설사업자별 전문적인 시공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지보수공사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주력분야 관리체계 마련(안 제8조제2항, 별지 제1호·제1호의2·제2호·제3호 서식 등)

유지보수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사의 유형에 따라 건설공사의 실적을 관리하고,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대해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업무분야를 지정받도록 함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등 건설업 등록사항으로 주력분야를 관리하도록 함.

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안 제23조에서 제25조까지, 별표 제2호 및 제3호 등)

발주자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내용 중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업무분야를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건설사업자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지 주력분야별 건설공사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등록번호, 업종 및 영 별표 1의3의 기준에 따라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 중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업무분야(이하 “주력분야”라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업종별”을 “업종별 및 영 별표 제 1의3에 따른 주력분야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2”를 “전문업종 및 주력분야별로 별표 2”로 한다.

제24조제1항제5호 중 “건설업종별·전문분야별”을 “건설업종별·주력분야별”로 한다.

제25조의 제목“(주요공종별 공사실적의 기재)”를“(주력분야 및 주요공종별 공사실적의 기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요공종별”을 “주력분야 및 주요공종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주요공종”을 “주력분야 및 주요공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공종별”을 “제2항에 따른 주력분야 및 주요공종별”로 한다.

제25조의7제1호다목을 삭제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을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주력분야를 등록

· 지정받은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방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중 “업종을 등록한”을 “업종 및 주력분야를 등록·지정받은”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 중 “업종을 등록한”을 “업종 및 주력분야를 지정을 등록·지정받은”으로, “업종별”을 “업종별·주력분야별”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공사실적의 주요 공종”을 “공사실적의 주력분야 및 주요 공종”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주요공종”을 “주력분야 및 주요 공종”으로 하며, 같은 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업종 | 주력분야 | 주요공종 |
|---------------------------|-----------------|--|
| 가.지반조성·포장 공사업 | 1)토공사 | 일반토공사, 밭파공사 |
| | 2)포장공사 | 일반포장공사, 포장유지관리공사 |
| | 3)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 일반보링·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지하수개발공사), 파일공사 |
| 나.실내건축공사업 | 4)실내건축공사 | 일반실내건축공사,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
| 다.금속창호·지붕 건축물조립공사 업 | 5)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 금속구조물공사, 창호공사, 온실설치공사 |
| | 6)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 지붕·판금공사, 건축물조립공사 |
| 라.도장·습식방수 ·석공사업 | 7)도장공사 | 일반도장공사, 재(再)도장공사, 차선도색공사 |
| | 8)습식·방수공사 |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 |
| | 9)석공사 | 석공사 |
| 마.조경식재·시설 물설치공사업 | 10)조경식재공사 | 일반조경식재공사, 조경유지관리공사 |
| | 11)조경시설물설치공사 | 조경시설물설치공사 |
| 바.철근·콘크리트공사업 | 12)철근·콘크리트공사 | 철근·콘크리트공사 |
| 사.구조물해체·비 계공사업 | 13)구조물해체·비계공사 | 구조물해체공사, 비계공사 |
| 아.상·하수도설비공사 업 | 14)상·하수도설비공사 | 상수도설비공사, 하수도설비공사 |
| 자.철도·궤도공사 업 | 15)철도·궤도공사 | 철도·궤도공사 |
| 차.철강구조물공사업 | 16)철강구조물공사 | 일반철강구조물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일반철강재설치공사, 교량철구조물설치공사 |
| 카.수중·준설공사 업 | 17)수중공사업 | 수중공사 |
| | 18)준설공사업 | 준설공사 |
| 타.승강기·삭도공사 업 | 19)승강기설치공사 | 일반승강기설치공사, 기계식주차기설치공사 |
| | 20)삭도설치공사 | 삭도설치·제거공사, 삭도유지관리공사 |

| | | |
|------------------|----------------|-----------------------------|
| 파.기계가스설비공사 사업 | 21)기계설비공사 | 건축기계설비공사, 플랜트기계설비공사, 자동제어공사 |
| | 22)가스시설공사(제1종) | 가스시설공사(제1종) |
| 하.가스난방공사사업 | 23)가스시설공사(제2종) | 가스시설공사(제2종) |
| | 24)가스시설공사(제3종) | 가스시설공사(제3종) |
| | 25)난방공사(제1종) | 난방공사(제1종) |
| | 26)난방공사(제2종) | 난방공사(제2종) |
| | 27)난방공사(제3종) | 난방공사(제3종) |

별표 5 제1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전문공사(가스난방공사업을 제외한다)

라. 가스난방공사업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2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 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7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의2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서식 제17호에서 서식 제20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유효기간)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 2. 전문공사 공사실적의 주요공종 고. 시설물유지관리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건설공사 실적신고에 관한 적용례) 별지 서식 제18호에서 서식 제20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실적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건설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0일 |
| 신청인 |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 | 대표자 |
| | 영업소 소재지 | | (전화번호:) |
| |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 | |
| |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 | |
| 신청업종 | 주력분야 | 등록한 건설업 (주력분야:) (번호) | |
| ①특례 신규(추가) 신청: 예[] 아니요 [] | | ②기존 특례적용 여부: 예[] 아니요 [] | |
| 업종: | 감면자본금: []백만원 감면기술능력: [] 명 | 업종: | 감면자본금: []백만원 감면기술능력: [] 명 |
| 공제조합출자 | | 비고 | |
| 외국인 등의 신청자 기재사항 |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인을 포함합니다)이 법인의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국적의 외국인으로 구성된 법인이 건설업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금액과 출자비율을 비고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수수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수수료 |
|---|---|
| 신청인 제출서류 | 경유·처리기관 확인사항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 신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도지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 및 별표 2의 시설·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종류·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4.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5.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확인서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이나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의 시설·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임대차인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3.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영업소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경유·처리기관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여권,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재외국민등록증 또는 여권,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외국인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08.12.31>

기관명

| | | | |
|---------|-----|--------|--------|
| 우 | 주소 | /전화() | /전송() |
| 사무처장○○○ | ○○부 | 부서장○○○ | 담당자○○○ |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발신

인

참 조

제 목 : 건설업등록신청서 심사결과 통보서

| 업 체 현 황 | | | | | |
|---|---|---------------------|------|---------|------|
| 상 호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 업체구분 | | 전화번호 | | 영업소소재지 | |
| 조직형태 | 주식 <input type="checkbox"/> 유한 <input type="checkbox"/> 합명 <input type="checkbox"/> 합자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 | | | |
| 납입자본금 | | | | 설립일자 | |
| 국적 또는 소 속 국가명 | | | | 등록신청일 | |
| 투자비율 (외국인인 경우) | | | | 법정처리기한 | |
| 업종보유현황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기타 건설업) | | | | | |
| 연번 | 업종명 | 주력분야 (전문공사업에 한함) | 등록번호 | 등록일 | 비 고 |
|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신청업종현황 | | | | | |
| 연번 | 업종명 | 주력분야 (전문공사업에 한함) | 비 고 | | |
| 1 | | | | | |
| 2 | | | | | |
| 임 원 현 황 | | | | | |
| 연번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직 위 | 상근 유무 | 등기일자 |
|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건설업등록 등 정보관리대장

(앞 쪽)

| | | | |
|------------------|-----------|--------------------------------|--|
| 일 반 현 황 | 상 호 | 법 인 등 록 번 호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 |
| | 영업소소재지 | (전화번호 :) | |
| | 대표자(생년월일) | 국 적 또는 소 속 국 가 명 | |
| | 납 입 자 본 금 | 투 자 비 율 (외국인의 경우) | |

| | | | | | | |
|------------------|-----|---------|-------|--------|---------|-----|
| 등 록 업 종 | 업 종 | 등 록 번 호 | 등 록 일 | 특례감면사항 | 주 력 분 야 | 비 고 |
| | | 제 호 | | | | |
| | | 제 호 | | | | |
| | | 제 호 | | | | |

| | | | | | | | | | |
|------------------|---------|------|----|------------|-----------|------|----|--------------|------------|
| 인 적 현 황 | 임 원 현 황 | | | | 기 술 인 현 황 | | | | |
| | 성명 | 생년월일 | 직위 | 등기일 퇴사일 | 성명 | 생년월일 | 직위 | 기술등급 자격현황 | 입사일 퇴사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설 · 장 비 현 황 | 시 설(사무실 포함) 현 황 | | | | 장 비 현 황 | | | |
| | 시설명 | 실면적 | 시설 주소 | 소유형태 | 장비명 | 등록번호 | 규격 | 취득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산 현 황 | 대 차 대조표 (기준일:) | 자산(계:) | | 부채(계:) | | 자본(계:) | | | |
| | | 유동자산 | 고정자산 | 유동 | 고정 | 자본금 | 자본 잉여금 | 이익 잉여금 | 자본조정 |
| | 손 익 계산서 (시작일: 종료일:) | 매출액 | | 매출원가 | 매출 총이익 | 판매비와 관리비 | 영업이익 | 영업외 이익 | 영업외 비용 |
| | | 경상이익 | | 특별이익 | 특별손실 | 법인세 차감전 이익 | | 법인세등 | 당기 순이익 |
| | | | | | | | | | |

건설업등록증

1. 업종 및 주력분야 : (주력분야 :)
2. 등록번호 :
3. 상호 :
4. 대표자 :
5. 주된 영업소 소재지 :
6.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7. 국적(소속 국가명) :
8. 등록일자 :

위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작인

| 건설업등록수첩 | | | |
|--|--|--------------------------------------|--|
| 업 종 | | 등 록 번 호 | |
| 주 력 분 야 | | | |
| 상 호 | | 대 표 자 | |
| 주 된 영 업 소 소재지 | | 법 인 등 록 번 호 (생년월일) | |
| 국 적 (소속국가명) | | 등 록 일 자 | |
| <p>위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임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20px 0;">년 월 일</p> <p style="margin: 20px 0;">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div style="border: 2px solid orange;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width: 60px; height: 6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직인 </div> </p> | | | |

105mm×148mm[백상지 150g/m²]

| 변경 사항 | | | |
|-------|------|------|--------------------|
| 변경일 | 변경구분 | 변경내용 | 기록일 및 기록자(서명 또는 인) |
| | | | |

| 행정 처분 사항 (시정지시·시정명령·영업정지·과징금·등록말소·과태료) | | | |
|---|----|---------------|------------------------|
| 처분내용 | 사유 | 처분기관 (처분일) | 기록일 및 기록자 (서명 또는 인) |
| | | | |

| 건설업 교육사항 | | | |
|----------|------|-------|------------------------|
| 교육기간 | 교육시간 | 교육기관명 | 기록일 및 기록자 (서명 또는 인) |
| | | | |

시 공 능 력

| 연 도 | 공사의 종류 | 금 액 (백만원) | 기록일 및 기록자(서명 또는 인) |
|-----|--------|-----------|--------------------|
| | | | |

공사금액의 하한

| 연 도 | 공사의 종류 | 금 액 (백만원) | 기록일 및 기록자(서명 또는 인) |
|-----|--------|-----------|--------------------|
| | | | |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일 |
| 신청인 |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 대표자 | |
| | 영업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 |
| 신청내용 | 업종 | 주력분야 | 등록번호 |
| | 재발급신청사유 | |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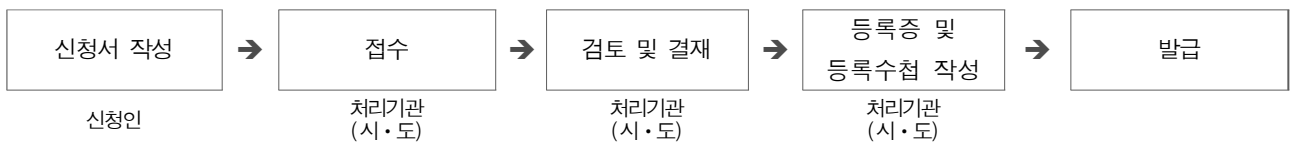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 별 시 장
광 역 시 장
특 별 자 치 시 장 귀하
도 지 사
특 별 자 치 도 지 사

| | |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
|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수수료 |

처리절차



건설업등록대장

(앞 쪽)

| 비밀업종 | 업종 | 전문공사업의 주력분야 | 등록번호 | 등록일 | 특례감면사항 | 비고 | |
|------|----|----------------|------|-----|--------|----|--|
| | | | 제 호 | | | | |
| | | | 제 호 | | | | |
| | | | 제 호 | | | | |
| | | | 제 호 | | | | |
| | | | 제 호 | | | | |
| | | | 제 호 | | | | |
| | | | 제 호 | | | | |

| 일반현황 | 상호 | | 법인등록번호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 |
|------|-----------|-----------|---------------------------|--|
| | 영업소소재지 | (전화번호 :) | | |
| | 대표자(생년월일) | |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 |
| | 납입자본금 | | 투자비율(외국인의 경우) | |

| 변경사항 | 구분 | 변경내용 | 변경일 | 구분 | 변경내용 | 변경일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150g/m²]

(뒤 쪽)

| 시공능력 및 공사금액의 하한 | 시공능력 | | | 공사금액의 하한 및 주력분야 공사금액 | | |
|-----------------|------|--------|----------|----------------------|--------|----------|
| | 연도 | 공사의 종류 | 금액 (백만원) | 연도 | 공사의 종류 | 금액 (백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행정 처분 | (시정지시·시정명령·영업정지·과징금·등록말소·과태료, 부도·압류·소송 등) | | | | |
|-------|---|----|------|------|---------------------|
| | 처분내용 | 사유 | 처분기관 | 처분일자 | 기록일 및 기록자 (서명 또는 인) |
| | | | | | |

유의사항

업종의 기재사항 중 특례감면사항란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를 인정받은 업종에 대하여 감면받은 자본금의 금액(백만원) 및 건설기술인의 수(명)를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150g/m²]

3. 공사대금 및 공사진척사항

가. 공사대금수령사항

나. 하도급대금지급사항(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 지급한 경우를 말합니다)

| 구분 | 수령업체 | 수령일 |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 ⑦세금계산서 발행금액 | 수령금액 | | | | 구분 | 하도급업체 | 지급일 | 지급금액 | | | |
|-----|------|-----|------------|-------------|------|----|----|----|-----|-------|-----|------|----|----|----|
| | | | | | 계 | 현금 | 어음 | 기타 | | | | 계 | 현금 | 어음 | 기타 |
| 선급금 | | | | | | | | | 선급금 | | | | | | |
| 기성금 | | | | | | | | | 기성금 | | | | | | |
| 기성금 | | | | | | | | | 기성금 | | | | | | |
| 준공금 | | | | | | | | | 준공금 | | | | | | |

4. 공사참여자 현황

가. 현장 배치 건설기술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 소속업체 구분 | 소속업체명 | 기술인 성명 | 생년월일 | 기술종목 및 등급/자격증 | 배치기간 | ⑧발주자승낙여부 | |
|--|-------|--------|------|---------------|------|---------------------|--------|
| | | | | | | 구분 | 발주자승낙서 |
| <input type="checkbox"/> 원도급자 <input type="checkbox"/> 하도급자 | | | | | ~ | []중복배치 []배치 예외 | |
| <input type="checkbox"/> 원도급자 <input type="checkbox"/> 하도급자 | | | | | ~ | []중복배치 []배치 예외 | |

나. 하도급 계약

| 원도급업체명 | 하도급업체 | | | 하도급내용 | | | | |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 | | | ⑪발주자서면 승낙서 | |
|--------|-------|--------|---------|-------|------|-----------|------|----|--------------|---------|------------|--|--|-------|------------|-----------------|
| | 상호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계약체결일 | 공사기간 | 업종 및 등록번호 | 주력분야 | 공종 | 도급금액 (하도급부분) | 하도급계약금액 | 하도급률 | 대금지급주체 | 교부여부 | ⑨교부내용 | | ⑩교부면제 사유 및 서류유류 |
| | | | | | ~ | | | | 원 | 원 | % | <input type="checkbox"/> 발주자 <input type="checkbox"/> 추급인 | <input type="checkbox"/> 교부 <input type="checkbox"/> 교부면제 | | | |
| | | | | | ~ | | | | 원 | 원 | % | <input type="checkbox"/> 발주자 <input type="checkbox"/> 추급인 | <input type="checkbox"/> 교부 <input type="checkbox"/> 교부면제 | | | |

다. 재하도급 계약

| 하도급업체명 | 재하도급업체 | | | 재하도급내용 | | | | |
|--------|--------|--------|---------|--------|----|--------|---------|------------|
| | 상호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계약체결일 | 공종 | 재하도급금액 | ⑫재하도급사유 | ⑬수급인 서면승낙서 |
| | | | | | | | | |

라. 건설기계대여업체 (수급인이 체결한 계약만 작성합니다)

| 원도급업체명 | 건설기계대여업체 | | 건설기계 대여내용 | | |
|--------|----------|---------|-----------|-------|-------|
|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⑭건설기계명 | ⑮대여기간 | ⑯대여금액 |
| | | | | | 원 |

297mm×210mm[백상지 150g/㎡]

작성방법

1. 건설공사대장 통보(기재) 대상자는 수급인이며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구성원 정보까지 모두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2. 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서식의 빈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식에 빈칸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예: 공동도급수급체 구성원이 3인 이상인 경우 등).

<항목별 설명>

1. 공사개요

①공사종류(상세종류)

| 공종 | 1) 세부공종(종합) | | | |
|------------------|-----------------------|---------------|---|----------------|
| 토목 | 일반도로 | 항 만 | 철도터널 | 정수장 |
| | 고속도로 | 공 항 | 간 척 | 하수도 |
| 도로교량 | 고속도로 | 일반철도 | 치산·치수 및 사방하천 | 택지조성 |
| | 도로교량 | 고속철도 | 관개수로 및 농지정리 | 공업용지 조성 |
| 댐 | 철도교량 | 지하철 | 상수도 1천mm 이상 | 기타토목시설 |
| | 댐 | 도로터널 | 상수도 1천mm 이하 | |
| 건축 |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 사무실빌딩 | 학 교 | 전시(展示)시설 |
| | 저층아파트(5층 이하) | 오피스텔 | 병 원 | 창고, 차고, 터미널건물 |
| 고층아파트(6층~15층 이하) | 인텔리전트빌딩 | 전통양식건축 | 전통양식건축 | 공장, 작업장용 건물 |
| | 초고층아파트(16층 이상) | 호텔·숙박시설 | 교회·사찰 등 종교용 건물 | 기계기구시설(플랜트 제외) |
| 주거·사무실겸용 건물 | 관공서건물(11층 이하) | 관공서건물(11층 이상) | 기타 문화재, 유적건물 | 위험물저장소 |
| | 상가·백화점·쇼핑센터 | 관공서건물(12층 이상) | 경기장·운동장 | 기타 |
| 산업·환경 설비 | 제철소 및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 열병합발전소 |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 | 그 밖의 산업·환경설비 |
| | 원자력발전소 | 수력발전소 | 플랜트설치공사 | |
| 조경 | 화력발전소 |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공사 | 하수종말처리장 | |
| | 수목원 | 공원의 조성공사 | 폐수종말처리장 | |
| 2) 세부공종(전문) | | | | |
| 일반토공사 | 일반도장공사 | 상수도설비공사 | 건축기계설비공사 플랜트기계설비공사 자동제어공사 가스시설공사(제1종) 가스시설공사(제2종) 가스시설공사(제3종) 난방공사(제1종) 난방공사(제2종) 난방공사(제3종) | |
| 발파공사 | 재(再)도장공사 | 하수도설비공사 | | |
| 일반포장공사 | 차선도색공사 | 철도·궤도공사 | | |
| 포장유지관리공사 | 미장공사 | 일반강구조물공사 | | |
| 일반보링·그라우팅공사 | 타일공사 |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 | |
| 착정공사(지하수개발공사) | 방수공사 | 일반철강재설치공사 | | |
| 파일공사 | 조적공사 | 교량철구조물설치공사 | | |
| 일반실내건축공사 | 석공사 | 수중공사 | | |
|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 일반조경식재공사 | 준설공사 | | |
| 창호공사 | 조경유지관리공사 | 일반승강기설치공사 | | |
| 금속구조물공사 | 조경시설물설치공사 | 기계식주차기설치공사 | | |
| 온실설치공사 | 철근·콘크리트공사 | 삭도설치·제거공사 | | |
| 지붕·판공공사 | 비계공사구조물해체공사 | 삭도유지관리공사 | | |
| 건축물조립공사 | | | | |

- ② 건축허가(신고)번호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부여된 건축허가 또는 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 ③ 연락처 : 발주자 담당자의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포함)
2. 도급계약
 - ④ 직접시공금액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제1항 및 영 제30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직접시공 의무공사의 경우에 기재합니다.
 - ⑤ 직접시공 예외사유 및 증빙서류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제3항 각 호에 해당하여 직접시공하지 않은 경우 그 예외사유와 이를 증빙 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 ⑥ 보증금
 - 보증종류 : 계약보증, 공사이행보증, 선급금보증, 하자보수보증
 - 예치방법 : 현금, 유가증권, 보증서발급 등
 - 비고 : 보증서를 발급한 경우 보증서번호, 보증기관, 발급업체, 발급일자 를 그 외 방법인 경우 예치업체를 기재합니다.
3. 공사대금 및 공사진척사항
 - ⑦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및 세액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4. 공사참여자 현황
 - ⑧ 발주자 승낙여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2개 이상의 공사현장에 배치하는 경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각호의 경우에 해당되어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아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에 기재하며, 그 발주자 서면 승낙서를 스캔 파일로 첨부합니다.
 - ⑨ 교부내용 : 보증서번호, 보증기관, 발급일자, 보증금액을 기재합니다.
 - ⑩ 교부면제 사유 및 증빙자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부면제사유를 적고, 이를 증빙하는 증빙자료 파일을 첨부합니다.
 - ⑪ 발주자서면승낙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동종 간 하도급)에 해당하여 발주자 서면승낙을 받은 경우, 그 발주자 서면 승낙서를 스캔 파일로 첨부합니다.
 - ⑫ 재하도급 사유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른 재하도급사유를 적습니다.
 - ⑬ 수급인서면승낙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수급인서면승낙서를 스캔화일로 첨부합니다.
 - ⑭ 건설기계명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
 - ⑮ 대여기간 및 ⑯대여금액 : 월대 또는 일대로 지급되더라도 전체 대여기간 및 전체 대여금액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1. 공사 개요

(3쪽 중 제1쪽)

| | | | | | | | |
|------------------|---------|---|--|-------------------------|-------------------------|---------------|---|
| 공사명 | | (원 공사명:) | | 공사유형 | | []신설 []유지보수 | |
| ①공종 | | | | 공종: 세부공종(종합): 세부공종(전문): | | 현장 소재지 | |
| 발주자 | 구분 | []공공 []민간(법인) []민간(개인) | | 기관명(상호) (개인인 경우 성명) | 법인등록번호 (개인인 경우 생년월일)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②연락처 | | | |
| 수급인 | 상호 | |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수령 여부 | | [] 예 [] 아니오 (발주자 직불합의 :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 | | | |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 | - 퇴직공제가입 여부: []예 []아니오 | | - 공제가입번호: | | - 가입날짜: | |
| 도급방법 | | []단독도급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 | | | | |

2. 하도급계약 내용

가. 하도급계약

| 계약연월일 | 착공연월일 | 준공(예정)연월일 | 하도급계약금액 | ③보증금 | | | |
|-------|-------|-----------|---------|------|------|------|----|
| | | | | 보증종류 | 보증금액 | 예치방법 | 비고 |
| | | | | | | | |

나. 하도급업체

| 구분 | 상호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 주력분야 | 지분을 또는 분담내용 (공동도급인 경우) | 업체별 하도급금액 |
|-----|----|--------|---------|----------------|------|---------------------------|-----------|
| 대표사 | | | | | | | |
| 구성원 | | | | | | | |
| 구성원 | | | | | | | |

3. 공사대금 및 공사진척사항

| 구분 | 수령업체 |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 ④세금계산서 발행금액 | 수령일 | 수령금액 | | | |
|-----|------|---------------|----------------|-----|------|----|----|----|
| | | | | | 계 | 현금 | 어음 | 기타 |
| 선급금 | | | | | | | | |
| 기성금 | | | | | | | | |
| 기성금 | | | | | | | | |
| 준공금 | | | | | | | | |

297mm×210mm[백상지 (150g/㎡)]

4. 공사 참여자 현황

가. 현장 배치 건설기술인(※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을 말합니다)

| 소속업체구분 | 소속업체명 | 기술인 성명 | 생년월일 | 기술종목 및 등급/자격증 | 배치기간 | ⑤발주자승낙여부 | |
|--|-------|--------|------|---------------|------|---|--------|
| | | | | | | 구분 | 발주자승낙서 |
| <input type="checkbox"/> 하도급업체 <input type="checkbox"/> 재하도급업체 | | | | | ~ | <input type="checkbox"/> 중복배치 <input type="checkbox"/> 배치예외 | |
| <input type="checkbox"/> 하도급업체 <input type="checkbox"/> 재하도급업체 | | | | | ~ | <input type="checkbox"/> 중복배치 <input type="checkbox"/> 배치예외 | |

나. 재하도급계약

| 하도급업체명 | 재하도급업체 | | | 재하도급내용 | | | | | | | ⑥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 | | ⑦재하도급사유 | ⑧수급인 서면승낙서 |
|--------|---------|--------|---------|--------|------|-----------|------|----|------|--|---|------|-------------|---------|------------|
| | 재하도급업체명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계약체결일 | 공사기간 | 업종 및 등록번호 | 주력분야 | 공종 | 계약금액 | 대금지급주체 | 교부여부 | 교부내용 | 면제사유 및 증빙서류 | | |
| | | | | ~ | | | | | 원 | <input type="checkbox"/> 수급인 <input type="checkbox"/> 하수급인 | <input type="checkbox"/> 교부 <input type="checkbox"/> 교부면제 | | | | |
| | | | | | | | | | 원 | <input type="checkbox"/> 수급인 <input type="checkbox"/> 하수급인 | <input type="checkbox"/> 교부 <input type="checkbox"/> 교부면제 | | | | |

다. 건설기계대여업체 (※ 하수급인이 체결한 계약만 작성합니다)

| 하도급업체명 | 건설기계대여업체 | | 건설기계 대여내용 | | |
|--------|----------|---------|-----------|-------|-------|
|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⑨건설기계명 | ⑩대여기간 | ⑪대여금액 |
| | | | | | 원 |
| | | | | | 원 |

297mm×210mm[백상지 (150g/㎡)]

작성방법

1.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작성) 대상자는 하수급인이며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구성원 정보까지 모두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2. 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서식의 빈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식에 빈칸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예: 공동도급수급체 구성원이 3인 이상인 경우 등)

<항목별 설명>

1. 공사개요

① 공시종류(상세종류)

| 공종 | 1) 세부공종(중합) | | | |
|-----------------|---|---|---|--|
| 토목 | 일반도로 고속도로 고속도로 도로교량 철도교량 댐 | 항만 공항 일반철도 고속철도 지하철 도로터널 | 철도터널 간척 치수·치수 및 사방하천 관개수로 및 농지정리 상수도 1천mm 이상 상수도 1천mm 이하 | 정수장 하수도 택지조성 공업용지 조성 기타토목시설 |
| 건축 |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저층아파트(5층 이하) 고층아파트(6층-15층 이하) 초고층아파트(16층 이상) 주거·사무실겸용 건물 상가·백화점·쇼핑센터 | 사무실빌딩 오피스텔 인텔리전트빌딩 호텔·숙박시설 관광서건물(11층 이하) 관광서건물(12층 이상) | 학교 병원 전통양식건축 교회·사찰 등 종교용 건물 기타 문화재, 유적건물 경기장·운동장 | 전시(展示)시설 창고, 차고, 터미널건물 공장, 작업장용 건물 기계기구시설(플랜트 제외) 위험물저장소 기타 |
| 산업· 환경 설비 | 제철소 및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원자력발전소 화학발전소 | 열병합발전소 수력발전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공사 |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 플랜트설치공사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 그 밖의 산업·환경설비 |
| 조경 | 수목원 | 공원의 조성공사 | 기타 조경공사 | |

2) 세부공종(전문)

| | | | |
|---|--|--|---|
| 일반토공사 발파공사 일반포장공사 포장유지관리공사 일반보링·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지하수개발공사) 파일공사 일반실내건축공사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 지붕·판공사 건축물조립공사 | 일반도장공사 재(再)도장공사 차선도색공사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 석공사 일반조경식재공사 조경유지관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비계공사구조물해체공사 | 상수도설비공사 하수도설비공사 철도·궤도공사 일반강구조물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일반철강재설치공사 교량철구조물설치공사 수중공사 준설공사 일반승강기설치공사 기계식주차기설치공사 삭도설치·제거공사 삭도유지관리공사 | 건축기계설비공사 플랜트기계설비공사 자동제어공사 가스시설공사(제1종) 가스시설공사(제2종) 가스시설공사(제3종) 난방공사(제1종) 난방공사(제2종) 난방공사(제3종) |
|---|--|--|---|

② 연락처 : 발주자 담당자의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포함)

2. 하도급 계약내용

③ 보증금

- 보증종류 : 계약보증, 공사이행보증, 선급금보증, 하자보수보증

- 예치방법 : 현금, 유가증권, 보증서 등

- 비고 : 보증서를 발급한 경우 보증서번호, 보증기관, 발급업체, 발급일자를 그 외 방법인 경우 예치업체를 기재합니다.

3. 공사대금 및 공사진척사항

④ 세급계산서 발행금액 : 세급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및 세액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4. 공사참여자 현황

⑤ 발주자 승낙여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2개 이상의 공사현장에 배치하는 경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각호의 경우에 해당되어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아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에 기재하며, 그 발주자 서면 승낙서를 스캔 파일로 첨부합니다.

⑥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제2호가목에 따라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한 경우, 보증서번호, 보증기관, 발급일자를 기재합니다.

⑦ 재하도급사유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른 재하도급사유를 적습니다.

⑧ 수급인서면승낙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수급인서면승낙서를 스캔 확일로 첨부합니다.

⑨ 건설기계명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27종의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⑩ 대여기간 및 ⑪대여금액 : 월대 또는 일대로 지급되더라도 전체 대여기간 및 전체 대여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97mm×210mm[백상지 (150g/㎡)]

년도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서

(4쪽 중 제1쪽)

| | | | | | | | | | | | | | |
|--------|--|--|--|--|--|--|--|-----|--|------|--|--|--|
| 본사 소재지 | | | | | | | | 주업종 | | 등록번호 | | | |
|--------|--|--|--|--|--|--|--|-----|--|------|--|--|--|

| | | | | |
|------------------|-------|------------|-------|--|
| 실적내역표별로 해당공종에 ○표 | | | | |
| 20 토목 | 30 건축 | 40 산업·환경설비 | 50 조경 | |

| | |
|-------|-----------|
| 회사명 : | |
| 대표자 : | (서명 또는 인) |

| (1) 일 련 번 호 | (2) 공 사 명 | (3) 공 사 의 구 분 | (4) 세 부 공 종 (총합) | (5) 세 부 공 종 (전 문) | (6) 주 력 분 야 | (7) 공 사 지 역 | (8) 발 주 자 명 (9) 하도 급 공사 는 원도 급자명기 재 | (10) 도 급 종 류 1. 도급 2. 하도급 3. 자기공 사 | (11) 발 주 자 | (12) 계 약 방 법 | (13) 입 찰 형 태 | (14) 계 약 연 월 | (15) 착 공 (여 정) 연 월 | (16) 준 공 (여 정) 연 월 | (17) 당 년 도 계 약 액 또 는 이 월 계 약 액 (공동도급공사는 지분 기재) | | | | (18) 당 년 도 기 성 액 | | | | (19) 당 년 도 발 주 자 공 급 자 재 액 | | | | (20) 비 고 (공사 규 모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계약액 | | 전년도까지 누계기성액 | | 전년도까지 누계관 급자재액 | | | | | | | | | | | | | | | | |
| 상기항목[(8)항목제외]들은 뒤쪽을 참조하여 코드로 기재 | | | | | | | | | | | | | 연 | 월 | 연 | 월 | 연 | 월 | 조 | 천 | 백 | 십 | 억 | 조 | 천 | 백 | 십 | 억 | 조 | 천 | 백 | 십 | 억 | | |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의사항

1. 서식 상단의 '실적내역표별로 해당공종 ○표'란은 모든 건설사업자(총합 및 전문)가 해당 공종에 "○"표 하여야 합니다.
2. (3) 공사의 구분 : 건설사업자가 (3) 공사의 구분 부호코드를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3. (4) 세부공종(총합) : 종합건설사업자가 (4) 세부공종별(총합) 부호코드를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4. (5) 세부공종(전문) : 전문건설사업자가 (5) 세부공종별(전문) 부호코드를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5. (6) 주력분야 : 건설사업자가 (6) 주력분야 부호코드를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6. (7) ~ (13) 항목은 아래에 있는 표를 참고하여 해당 코드를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등록업종별 부호코드 | (3) 공사의 구분 부호코드 | (4) 세부공종별(종합) 부호코드 | | | |
|--|--------------------|---|--|---|--|
| (종합) 10:토목건축 20:토 목 30:건 축 40:산업 · 환경설비 50:조 경 | 1 : 신설 2 : 유지보수 | (토 목) 210:일반도로 211:고속화도로 212:고속도로 213:도로교량 214:철도교량 220:댐 230:항 만 231:공 항 240:일반철도 241:고속철도 242:지하철 243:도로터널 244:철도터널 250:간 척 | (건 축) 251:치산·치수및시방하 천 260:관개수로및농지정리 270:상수도 1천mm 이상 271:상수도 1천mm 이하 272:정수장 273:하수도 281:택지조성 282:공업용지조성 290:기타토목시설 | 311: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312:저층아파트(5층이하) 313:고층아파트(6~15층이상) 314:초고층아파트(16층이상) 315:주거·사무실겸용건물 320:상가·백화점·쇼핑센타 321:사무실빌딩 322:오피스텔 325:인텔리전트빌딩 330:호텔·숙박시설 340:관공서건물(11층이하) 341:관공서건물(12층이상) 342:학 교 343:병 원 350:전통양식건축 351:교회·사찰등 종교용건물 | 352:기타 문화재, 유적건 물 360:경기장·운동장 361:전시(展示)시설 370:창고,차고,터미널 건 물 371:공장, 작업장용건물 372:기계기구시설(플랜트 제외) 373:위험물저장소 380:기타 430:집단에너지공급시 설공사 440:쓰레기소각장설치 공사 450:플랜트설치공사 460:하수종말처리장 461:폐수종말처리장 470:그 밖의 산업·환 경설비 (조경공사) 510:수목원 520:공원의 조성공사 530:기타 조경공사 410:제철소 및 석유화학 공장등 산업생산시설 420:원자력발전소 421:화력발전소 422:열병합발전소 423:수력발전소 |

| 등록업종별 부호코드 | (6) 전문공사업의 주력분야 부호코드 | (5) 세부공종별(전문) 부호코드 | |
|---|---|---|--|
| (전 문) 61:지반조성·포장공사업 62:실내건축공사업 63: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64: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65:조경식재·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66:철근·콘크리트공사업 67: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68:상·하수도설비공사업 69:철도궤도공사업 70:철강구조물공사업 71:수중·준설공사업 72:승강기·삭도공사업 73:기계가스설비공사업 74:가스난방공사업 | 610:토공사 611:포장공사 612: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620:실내건축공사 630: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631: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640:도장공사 641:습식방수공사 642:석공사 650:조경식재공사 651:조경시설물설치공사 660:철근·콘크리트공사 670:구조물해체·비계공사 680:상·하수도설비공사 690:철도·궤도공사 700:강구조물공사 701:철강재설치공사 710:수중공사업 711:준설공사업 720:승강기설치공사 721:삭도설치공사 730:기계설비공사 731:가스시설공사(제1종) 740:가스시설공사(제2종) 741:가스시설공사(제3종) 742:난방공사(제1종) 743:난방공사(제2종) 744:난방공사(제3종) | 6100:일반토공사 6101:발파공사 6110:일반포장공사 6111:포장유지관리공사 6120:일반보링·그라우팅공사 6121:착정공사(지하수개발공사) 6122:파일공사 6200:일반실내건축공사 6201: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6300:금속구조물공사 6301:창호공사 6302:온실설치공사 6310:지붕·판금공사 6311:건축물조립공사 6400:일반도장공사 6401:재(再)도장공사 6402:차선도색공사 6410:미장공사 6411:타일공사 6412:방수공사 6413:조적공사 6420:석공사 | 6500:일반조경식재공사 6501:조경유지관리공사 6510:조경시설물설치공사 6600:철근·콘크리트공사 6700:구조물해체공사 6701:비계공사 6800:상수도설비공사 6801:하수도설비공사 6900:철도·궤도공사 7000:일반강구조물공사 7001:인도전용강재육교 설치공사 7010:일반철강재설치공사 7011:교량철구조물설치공사 7100:수중공사 7110:준설공사 7200:일반승강기설치공사 7201:기계식주차기설치공사 7210:삭도설치·제거공사 7211:삭도유지관리공사 7300:건축기계설비공사 7301:플랜트기계설비공사 7302:자동제어공사 7310:가스시설공사(제1종) 7400:가스시설공사(제2종) 7410:가스시설공사(제3종) 7420:난방공사(제1종) 7430:난방공사(제2종) 7440:난방공사(제3종) |

| (7)공사지역 부호코드 | (11) 발주자별 부호코드 | | | | (12) 계약방법 별 부호코드 | (13) 입찰형 태별 부호코드 | (20) 비고(공사규모 등) 기 재방법 |
|---|---|--|---|---|---|--|--|
| 11:서울 21:부산 22:대구 23:인천 24:광주 25:대전 26:울산 29:세종 31:경기 32:강원 33:충북 34:충남 35:전북 36:전남 37:경남 38:경북 39:제주 | (민간부분) (1)제조업 950:음식료품 951:섬유류 952:나무제품 953:종이제품 954:화학,섬유, 석탄 955:비금속광물 956:제1차금속 (철강업) 957:조립금속 (기계) 958:기타제조업 | (정부기관) (2)비제조업 960:농림·수 산 961:광업 962:전기· 가스·수도 963:도·소매, 음식,숙박 964:운수,창 고,통신 965:금융,보험 966:건설업(분 양임대는 부동산업 에포함) 967:사업,서비 스업 968:사회및개인 서비스업 | (자치단체) (기타) 41: 기획재정부 42: 교육부 43: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44: 국방부 45: 행정안전부 46: 문화체육관광부 47: 농림축산식품부 48: 산업통상자원부 49: 보건복지부 50: 환경부 51: 고용노동부 52: 국토교통부 53: 해양수산부 | 11:서울 21:부산 22:대구 23:인천 24:광주 25:대전 26:울산 29:세종 31:경기 32:강원 33:충북 34:충남 35:전북 36:전남 37:경북 38:경남 39:제주 | 1:장기계속공사 2:P.Q공사 3:대안입찰 4:설계시공일괄 입찰 5:실시설계입찰 6:기타 | 7:일반경쟁 8:지명경쟁 9:제한경쟁 10:수의계약 11:기타 | -건축공사:층수 및 연면적 (㎡)등 기재 -댐공사:댐의 높이(m) 및 저수용량(㎡)등 기재 -상·하수도:직경(m/m) 및 총길이(m)등 기재 -송유관:직경(m/m) 및 총 길이(m)등 기재 -고속도로·교량·지하철 ·터널:총길이(m)등 기재 -발전소공사:발전용량 (Kwh)등 기재 -간척공사:간척면적(㎡)등 기재 -쓰레기소각시설:1일 소각 량(t)등 기재 -폐수·하수종말처리장:1 일처리량(t)등 기재 -에너지저장시설:저장용량 (㎡)등 기재 ※ 공사규모는 가급적 공 사의 특성이 정확히 반 영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바랍니다. |

유의사항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종합공사의 업종(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을 모든 건설사업자(종합 및 전문)가 기재합니다.
2. (1)공사의 구분을 신설 또는 유지보수로 기재합니다.
3. (2)종합공사의 세부공종을 기재합니다.
4. (3)전문공사의 세부공종을 기재합니다.

(1) 공사의 구분 : 신설공사, 유지보수공사

(2) 종합공사의 세부공종

| 공종 | 세부공종(종합) | | | |
|---------|---|---|---|--|
| 토목 | 일반도로 고속화도로 고속도로 도로교량 철도교량 댐 | 항만 공항 일반철도 고속철도 지하철 도로터널 | 철도터널 간척 치산·치수 및 사방하천 관개수로 및 농지정리 상수도 1천mm 이상 상수도 1천mm 이하 | 정수장 하수도 택지조성 공업용지 조성 기타토목시설 |
| 건축 |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저층아파트(5층 이하) 고층아파트(6층~15층 이하) 초고층아파트(16층 이상) 주거·사무실겸용 건물 상가·백화점·쇼핑센터 | 사무실빌딩 오피스텔 인텔리전트빌딩 호텔·숙박시설 관공서건물(11층 이하) 관공서건물(12층 이상) | 학교 병원 전통양식건축 교회·사찰 등 종교용 건물 기타 문화재, 유적건물 경기장·운동장 | 전시(展示)시설 창고, 차고, 터미널건물 공장, 작업장용 건물 기계기구시설(플랜트 제외) 위험물저장소 기타 |
| 산업·환경설비 | 제철소 및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 열병합발전소 수력발전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공사 |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 플랜트설치공사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 그 밖의 산업·환경설비 |
| 조경 | 수목원 | 공원의 조성공사 | 기타 조경공사 | |

(3) 전문공사의 세부공종

| 세부공종 (전문) | | | |
|---------------|-------------|--------------|---|
| 일반토공사 | 일반도장공사 | 상수도설비공사 | 건축기계설비공사 플랜트기계설비공사 자동제어공사 가스시설공사(제1종) 가스시설공사(제2종) 가스시설공사(제3종) 난방공사(제1종) 난방공사(제2종) 난방공사(제3종) |
| 발파공사 | 재(再)도장공사 | 하수도설비공사 | |
| 일반포장공사 | 차선도색공사 | 철도·궤도공사 | |
| 포장유지관리공사 | 미장공사 | 일반강구조물공사 | |
| 일반보링·그라우팅공사 | 타일공사 |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 |
| 착정공사(지하수개발공사) | 방수공사 | 일반철강재설치공사 | |
| 파일공사 | 조적공사 | 교량철구조물설치공사 | |
| 일반실내건축공사 | 석공사 | 수중공사 | |
|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 일반조경식재공사 | 준설공사 | |
| 창호공사 | 조경유지관리공사 | 일반승강기설치공사 | |
| 금속구조물공사 | 조경시설물설치공사 | 기계식주차기설치공사 | |
| 온실설치공사 | 철근·콘크리트공사 | 삭도설치·제거공사 | |
| 지붕·판공공사 | 비계공사구조물해체공사 | 삭도유지관리공사 | |
| 건축물조립공사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4) 주력분야 부호코드 | (5) 공사의 구분 | (6) 세부공종별(종합) 부호코드 | | | | |
|---|------------------------|--------------------|--------------------|---|-------------------------------|--|
| | | 토 목 | 건 축 | 산업·환경설비 | | |
| 610:토공사 611:포장공사 612: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620:실내건축공사 630: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631: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640:도장공사 641:습식방수공사 642:석공사 650:조경식재공사 651:조경시설물설치공사 660:철근·콘크리트공사 670:구조물해체·비계공사 680:상·하수도설비공사 690:철도·궤도공사 700:강구조물공사 701:철강재설치공사 710:수중공사업 711:준설공사업 720:승강기설치공사 721:삭도설치공사 730:기계설비공사 731:가스시설공사(제1종) 740:가스시설공사(제2종) 741:가스시설공사(제3종) 742:난방공사(제1종) 743:난방공사(제2종) 744:난방공사(제3종) | 1 : 신설공사 2 : 유지보수공사 | 210:일반도로 | 311: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 410:제철소 및 석유화학공장등 산업생산시설 420:원자력발전소 421:화력발전소 422:열병합발전소 423:수력발전소 430:집단에너지 공급시설공사 440: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 450:플랜트설치공사 460:하수종말처리장 461:폐수종말처리장 462:그 밖의 산업·환경설비 | | |
| | | 211:고속화도로 | 312:저층아파트(5층이하) | | 조경 510:수목원 520:공원의 조성공사 | |
| | | 212:고속도로 | 313:고층아파트(6~15층이하) | | | |
| | | 213:도로교량 | 314:초고층아파트(16층이하) | | | |
| | | 214:철도교량 | 315:주거·사무실 겸용건물 | | | |
| | | 220:댐 | 320:상가·백화점·쇼핑센터 | | | |
| | | 230:항만 | 321:사무실빌딩 | | | |
| | | 231:공항 | 322:오피스텔 | | | |
| | | 240:일반철도 | 325:인텔리전트빌딩 | | | |
| | | 241:고속철도 | 330:호텔·숙박시설 | | | |
| | | 242:지하철 | 340:관공서건물(11층이하) | | | |
| | | 243:도로터널 | 341:관공서건물(12층이상) | | | |
| | | 244:철도터널 | 342:학교 | | | |
| | | 250:간척 | 343:병원 | | | |
| | | 251:치산·치수 및 사방하천 | 350:전통양식건축 | | | |
| | | 260:관개수로 및 농지정리 | 351:교회·사찰등 종교용건물 | | | |
| | | 270:상수도 1천mm이상 | 352:기타문화재·유적건물 | | | |
| | | 271:상수도 1천mm이하 | 360:경기장·운동장 | | | |
| | | 272:정수장 | 361:전시(展示)시설 | | | |
| | | 273:하수도 | 370:창고, 차고, 터미널건물 | | | |
| 281:택지조성 | 371:공장, 작업장용건물 | | | | | |
| 282:공업용지조성 | 372:기계기구설치(플랜트제외) | | | | | |
| 290:기타 토목시설 | 373:위험물저장소 | | | | | |
| | 380:기타 | | | | | |

(7) 세부공종별(전문) 부호코드

| | | |
|--------------------|-------------------|------------------|
| 6100:일반토공사 | 6500:일반조경식재공사 | 7200:일반승강기설치공사 |
| 6101:발파공사 | 6501:조경유지관리공사 | 7201:기계식주차기설치공사 |
| 6110:일반포장공사 | 6510:조경시설물설치공사 | 7210:삭도설치·제거공사 |
| 6111:포장유지관리공사 | 6600:철근·콘크리트공사 | 7211:삭도유지관리공사 |
| 6120:일반보링·그라우팅공사 | 6700:구조물해체공사 | 7300:건축기계설비공사 |
| 6121:착정공사(지하수개발공사) | 6701:비계공사 | 7301:플랜트기계설비공사 |
| 6122:파일공사 | 6800:상수도설비공사 | 7302:자동제어공사 |
| 6200:일반실내건축공사 | 6801:하수도설비공사 | 7310:가스시설공사(제1종) |
| 6201: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 6900:철도·궤도공사 | 7400:가스시설공사(제2종) |
| 6300:금속구조물공사 | 7000:일반강구조물공사 | 7410:가스시설공사(제3종) |
| 6301:창호공사 | 7001: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 7420:난방공사(제1종) |
| 6302:온실설치공사 | 7010:일반철강재설치공사 | 7430:난방공사(제2종) |
| 6310:지붕·판금공사 | 7011:교량철구조물설치공사 | 7440:난방공사(제3종) |
| 6311:건축물조립공사 | 7100:수중공사 | |
| 6400:일반도장공사 | 7110:준설공사 | |
| 6401:재(再)도장공사 | | |
| 6402:차선도색공사 | | |
| 6410:미장공사 | | |
| 6411:타일공사 | | |
| 6412:방수공사 | | |
| 6413:조적공사 | | |
| 6420:석공사 | | |

| (8) 공사지역별 부호코드 | (9) 계약방법별 부호코드 | (10) 입찰형태별 부호코드 | (18) 공사규모등 기재방법 |
|---|--|--|--|
| 11 : 서울 32 : 강원 21 : 부산 33 : 충북 22 : 대구 34 : 충남 23 : 인천 35 : 전북 24 : 광주 36 : 전남 25 : 대전 37 : 경남 26 : 울산 38 : 경북 29 : 세종 39 : 제주 31 : 경기 | 1 : 장기계속공사 2 : P.Q공사 3 : 대안입찰 4 : 설계시공 일괄입찰 5 : 실시설계입찰 6 : 기타 | 7 : 일반경쟁 8 : 지명경쟁 9 : 제한경쟁 10 : 수의계약 11 : 기타 | -건축공사 : 층수 및 연면적(m ²)등 기재 -댐공사: 댐의 높이(m) 및 저수용량(m ³)등 기재 -상·하수도 : 직경(m/m) 및 총길이(m)등 기재 -송유관 : 직경(m/m) 및 총길이(m)등 기재 -고속도로·교량·지하철·터널 : 총길이(km, m)등 기재 -발전소공사 : 발전용량(Kwh)등 기재 -간척공사 : 간척면적(m ²)등 기재 -쓰레기소각시설 : 1일 소각량(t)등 기재 -폐수·하수종말처리장 : 1일 처리량(t)등 기재 -에너지 저장시설 : 저장용량(m ³)등 기재 ※ 공사규모는 가급적 공사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8조(건설업등록의 공고) ① (생략)</p> <p>②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의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생략)</p> <p>2. <u>등록번호 및 업종</u></p> <p>3. 4. (생략)</p> <p>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방법)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은 영 별표 1에 따른 <u>업종별로</u> 평가한다. 다만,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p> <p>1. 2.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은 최근 3년간 공사실적(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는 산업·환</p> | <p>제8조(건설업등록의 공고)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등록번호, 업종 및 영 별표 1의3의 기준에 따라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 중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업무분야(이하 “주력분야”라 한다)</u></p> <p>3. 4. (현행과 같음)</p> <p>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방법) ① ----- ----- --- <u>업종별 및 영 별표 제1의3에 따른 주력분야별</u>---- ----- -----.</p> <p>1. 2. (현행과 같음)</p> <p>②----- ----- -----</p> |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서면승낙을 받을 것

가.·나. (생략)

다.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부터 교량의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공사를 하도급받은 영별표 1에 따른 철강재설치공사를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교량의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기 위하여 영별표 1에 따른 강구조물공사를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라. ~ 사. (생략)

2. (생략)

-----.

1. -----

가.·나. (현행과 같음)

<삭제>

라. ~ 사.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